



제433 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3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14.
- (3) 회 부 일 : 2026. 1.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출산·양육 여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보육·의료·돌봄 등 양육 관련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II.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는데,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0.75명에 불과한 상황임.

< 합계출산율 추이(2017~2024) >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출산율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율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만남이용권도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출생아동당 첫째아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첫만남이용권 개요 >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사용처)**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전달체계)**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 → (시군구) 대상자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초기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출생지역,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체류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음.

<장기 해외체류자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복지지원 사업>

구 분	법적 근거	해외체류 지급정지기준
첫만남이용권	-	-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 90일 이상 지속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 60일 이상 지속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 60일 이상 지속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0일 이상 지속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인구감소지역 현황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은 보육·의료 등 필수 인프라가 취약하여 해당 지역 거주민이 체감하는 양육의 비용과 불편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 지급액의 상한이나 지급 비율 등 대강의 기준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²⁾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그 금액은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아동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 경우 추가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시행한 첫만남이용권이 성별·지역적 차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일회적 성격의 보편적 출산지원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 우려도 존재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2) 2026년 2월 20일 기준